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2021.1.14.(목) 석간	배포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02-2100-2868)	담 당 자	김 선 욱 사무관 (02-2100-2871)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김 명 지 사무관 (02-2100-2870)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여 인 채(02-3705-5704)		서 지 은 사무관 (02-2100-295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 문 영 표(053-430-4331)		장 재 웅 과장 (02-3705-5425)
			이 민 상 팀장 (053-430-4333)

제목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 ①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②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 ③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¹⁾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²⁾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프로그램	지원대상	달라지는 내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체 소상공인	1.18일부터 금리, 보증료 인하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1.18일부터 신설(최대 1,000만원)

*버팀목자금 신청(200만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임차 소상공인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보증료	[기존] 0.9% → [1.18일부터] 1년차 0.3%, 2~5년차 0.9%
지원금리	2~4%대 →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①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②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지급액		
집합금지	300만원	소상공인 용자 프로그램(중기부 별도 안내 예정)	
집합제한	200만원	개인사업자	임차 소상공인
매출감소	100만원	법인	자가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a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카이다이빙,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별첨2]
-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 ①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 ②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지방관리청 콜센터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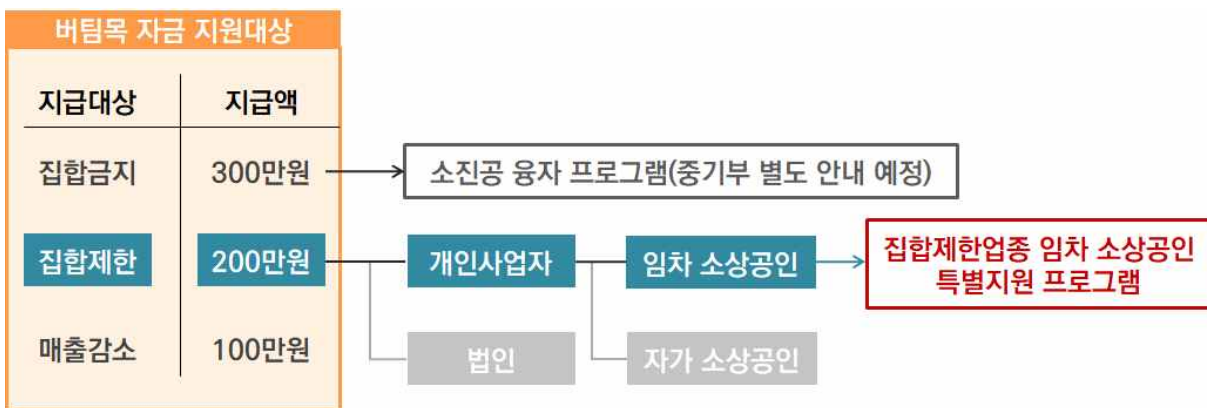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 ①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 ②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 ③ 개인사업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a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아마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2.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20.1.20일	'20.4.1일	'20.2.7일	'20.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접수종료	접수종료	3.6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20.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①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②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연락처	기 타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1644-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www.nhbank.com	접수 가능
신한은행	1577-8000 1599-8000 1544-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 가능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www.kebhana.com	접수 가능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www.knbank.co.kr	X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www.kjbank.com	접수 가능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www.dgb.co.kr	접수·대출 가능
부산은행	1544-6200 1588-6200	www.busanbank.co.kr	접수 가능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5번 질의]

5.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①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

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금완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입금완료 되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자	김명지(해성갈비탕식당)
사업자번호	611-90-40123
입금계좌정보	(은행명) 123456789
예금주명	김명지
지급완료 금액	200만원
진행현황	지급완료

② 결과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 가기 만들기(T)
 즐겨찾기에 추가(F)...
 소스 보기(V)
 요소 검사(L)
 인코딩(E) >
 인쇄(I)...
 인쇄 미리 보기(N)...
 새로 고침(R)
 Microsoft Excel로 내보내기(X)
 OneNote로 보내기(N)
 속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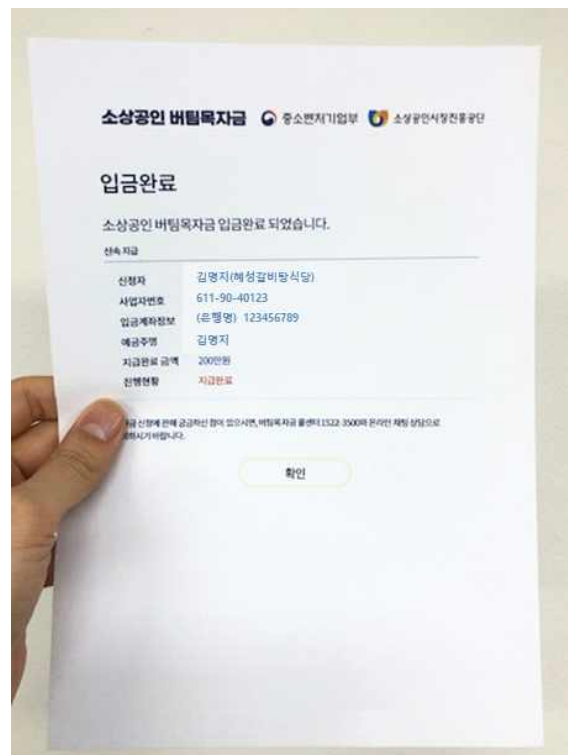
③ 인쇄 클릭

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200만원 확인

확인

- ③ 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



6.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7. 소상공인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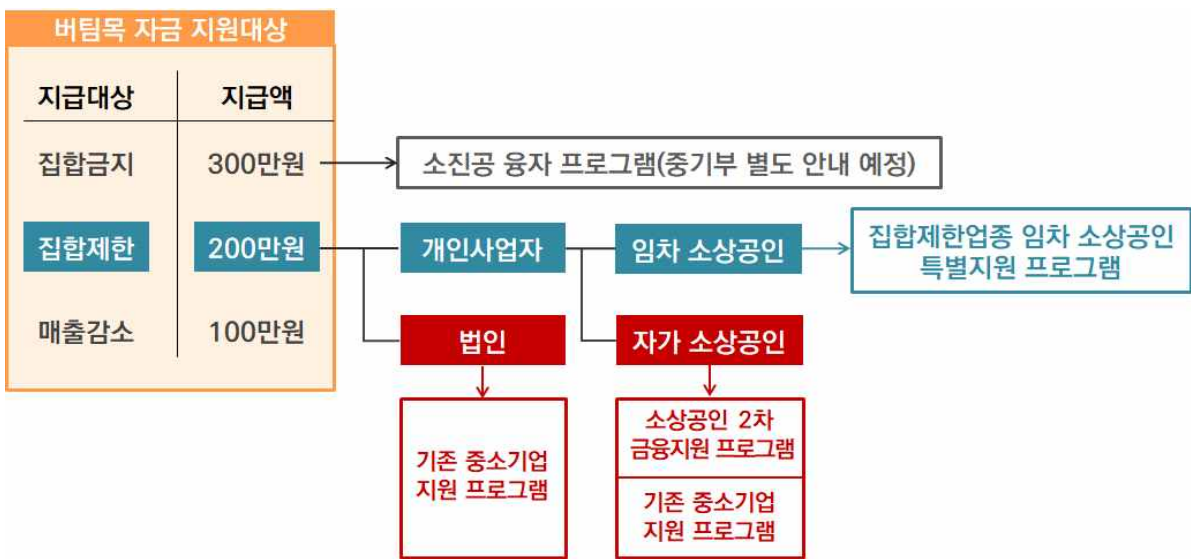
*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

8.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자가 소상공인은 금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지?

- 금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
 -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 코로나19 특례보증 (신보) >

- (규모) '21년 총 1.5조원
- (보증비율) 95%
- (한도) 기업당 3억원 (기존 잔액과 무관)
- (보증료율) 0.3%p 차감 (최대 1%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해내리 대출 (기은) >

- (규모) '21년 총 1조원 신규 공급
- (금리) 1%p 우대

별첨2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1.1.10일, 「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내일(11일)부터 지급 시작」)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 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3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